

대전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가단224780 판결 [사해행위취소,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대전신용보증재단

피고1. A

2. B

변론 종결2015. 1. 15.

판결 선고2015. 2. 5.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30,520,408원 및 위 금원 중 30,175,448원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2013. 11. 30.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2014. 11. 19.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2013. 11. 22. 체결한 매매계약은 취소한다.
 - 나. 피고 B는 피고 A에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 2013. 11. 28. 접수 제357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피고 A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30,520,408원 및 그 중 30,175,448원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2013. 11. 30.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4. 11. 19.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 및 피고 A가 2013. 11. 22.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 2013. 11. 28. 접수 제3572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성립되었으나, 그 이전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전인 2013. 10. 11. 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13. 11. 28. 원고가 대출 원리금 30,175,448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 2013. 11. 28. 접수 제357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자신이 2011. 12. 7. 피고 A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변제기로 정한 2013. 11. 27.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혀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가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태영

별지